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지방과 소관 “제14호 내지 제17호”를 “제10호 내지 제13호”로 하고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지방과	14	○ 현정원 범위내에서의 계 조직권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

(별표)중 “국민운동지원과”를 “사회진흥과”로 하고 “문화예술과”를 “문화체육과”로 하며

“생활체육과 제1호 내지 제2호”를 삭제하여 “문화체육과 제6호 내지 제7호”로 한다.

(별표)중 “관재담당관실”을 “회계과”로 하고, 세정과 및 회계과 소관 위임사무를 사회진흥과 다음 위치에 둔다.

(별표)중 보건과 소관 “62.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소 지정”을 삭제하고, “제63호 내지 제72호”를 “제62호 내지 제71호”로 하며,

“가정복지과” 소관 “제12호 내지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가정복지과	12	○ 노인복지 시설에 관한 다음 권한 가. 설치허가 및 등록 나.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 다. 운영지도 감독 라. 허가 및 등록취소	노인복지법 제19조 및 제20조 동법 제21조 동법 제23조 동법 제24조 및 제25조
	13	○ 노인복지법 위반자 조치	동법 제32조 및 제33조, 제34조

같은 가정복지과 소관 “제15호 내지 제25호”를 “제14호 내지 제24호”로 하고 “제25호 내지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부녀복지과 제1호 내지 제4호”를 삭제한다.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가정복지과	25	○ 결혼예식장, 장례식장, 장의사, 결혼상담소 영업에 관한 다음 권한 가. 영업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 나. 영업변경사항 이외의 변경신고 다. 휴업 또는 폐지신고 라.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가정의례에관한법률제5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동법 제8조 동법 제9조
	26	○ 가정의례준칙 계몽	동법 제3조
	27	○ 가정의례업소 지도단속, 감독	동법 제19조
	28	○ 가정의례업소 등 실태(조사)보고	동법 제11조

(별표)중 “산림과 제1호 내지 제25호”를 기반조성과 다음 위치에 두고,

“농산과 제12호 내지 제15호”를 “농산물유통과 제1호 내지 제4호”로 하여 농산과 다음 위치에 둔다.

(별표)중 “내수면어업과 제1호 내지 제16호”를 삭제하여 “축산과 제39호 내지 제54호”로 하며,
상정과 소관 위임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상정과	1	○ 도. 소매업 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시설의 개설허가 나. 대형점의 개설허가 다. 시장의 관리자 지정 라. 시설개설자 등에 대한 권고 마. 개업 등의 신고 바. 지위의 승계 및 사업의 양도승인, 양수신고 사. 영업정지 및 허가의 취소 아. 과징금 처분 자. 청문 차. 보고 카. 과태료 부과징수	도소매진흥법 제6조 동법 제13조의2 동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9조 동법 제9조 동법 제10조 동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0조 동법 제12조 동법 제23조 동법 제24조 동법 제50조제1항제2호 동법 제3호 동법 제58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압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고압가스 제조허가 나. 고압가스 제조변경허가 다. 사업개시, 휴지, 재개, 폐지신고 라. 법인의 대표자 변경신고 마. 공급자의 공급중지신고 및 위해 예방 조치명령 등 바. 안전관리자 채용, 해임 또는 퇴직 신고 사. 허가의 취소 등 아. 과태료 부과징수 자. 보고, 검사 등 	<p>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동법 제7조 동법시행규칙제4조제2항 동법 제24조</p> <p>동법 제15조 동법 제9조 동법 제43조 동법 제26조</p>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변경) 허가 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변경) 허가 다. 법인의 대표자 변경신고 라. 사업개시, 휴지, 재개, 폐지신고 마.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지위승계 신고 바. 공급자의 공급중지·실고 및 위해예방 조치명령 등 사. 안전관리자 채용, 해임, 퇴직신고 아. 공급규정(변경)승인 자. 허가의 취소 등 차. 과태료 부과징수 카. 조정명령 	<p>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 관리법 제3조 동법시행규칙제4조제2항 동법 제6조 동법 제7조</p> <p>동법 제32조 동법 제14조 동법 제26조 동법 제8조 동법 제48조 동법 제34조</p>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관리자 채용, 해임, 퇴직신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3조 제2항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 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의 시공자 등록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 관리법 제15조 제6항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 제4항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자의 채용, 해임신고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별표)중 공업과 소관 “제4호 내지 제9호” 및 “제12호 내지 제13호”를 삭제하고, “제11호”를 “제4호”로, “제14호”를 “제5호”로, “제19호”를 “제6호”로 하며,
관광과 소관 “제4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관광과	4	○ 관광지의 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대상 시설 및 금액의 결정과 징수	관광진흥법 제35조 제2항
	5	○ 관광지 조성계획(도 직접시행의 경우 제외)의 고시	동법 제24조 제3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